#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76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김동아·김문수·허성무

박균택 • 김영호 • 서삼석

한준호 • 이병진 • 임호선

홍기원 · 김남근 · 추미애

오세희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 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「특허법」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3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 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

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 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2조의3(자료의 제출) (생 략 | ) 제22조의3(자료의 제출) <u>①</u> (현행 |
|                     |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할 자료가 영업비밀 등 대통령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유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 여야 한다.</u>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              |

<신 설>

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

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

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